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 의무화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신설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6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68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	9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안 제19조 의3제6항 신설)	14
※ 참고자료	18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221976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7. 6.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3조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¹⁾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²⁾ 전용주차구획³⁾ 및 충전시설의 설치·이용·관리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25년 기준 49만기를 넘어섰으며, 공동주택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⁴⁾.

1) 전기자동차 누적등록 대수(2019~2025)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238,063	402,549	565,154	712,056	932,975
(당해년도 등록)	(100,427)	(164,486)	(162,605)	(146,902)	(220,919)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20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하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과 관련한 민원 등은 대표적으로 전용주차구획에 내연기관차가 주차하거나 전기자동차가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주차하여 다른 이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문제⁵⁾,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차공간을 전기차 전용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내연기관차 이용자와 전기차 이용자 간 주차공간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⁶⁾ 등이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화재 발생 시 책임 문제, 방화벽·화재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설치 등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⁷⁾.

(단위 : 기)

구 분	충전기 설치 기수	%
계	490,467	100.0
공공시설	22,005	4.5
공동주택시설(아파트 등)	338,596	69.0
관광시설	4,952	1.0
교육문화시설	11,935	2.4
근린생활시설	7,315	1.5
기타시설	52,437	10.7
상업시설	27,391	5.6
주차시설	21,407	4.4
차량정비시설	1,948	0.4
휴게시설	2,481	0.5

자료 : 국토교통부

- 5)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꾸준히 증가”(「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교육 추진」, 전주시 보도자료, 2024.12.6.), “지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신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는 데다 부실 신고까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서다. 10건 중 4건이 과태료 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서울신문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주민신고 10건 중 4건은 부실」, 2025. 3. 8)
- 6)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 auri brief 제289호.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 및 전력용량 등의 제약이 있고,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공간 배분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이용자와 전기차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7) 「주차 불가·충전소 반대…곳곳 ‘전기차 갈등’」(SBS, , 2024. 5. 6), 「‘지하주차장 출입금지’…전기차 화재에 입주민 갈등」(YTN, , 2024. 3. 20),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앞두고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 신경전」(서울신문, 2024. 8. 8)

개정안은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운영·관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설주차장⁸⁾(공동주택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 해당)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입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며,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주차장법」(국토교통부 소관)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을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의 하나로서 제한된 범위의 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⁹⁾,

8)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9) 「주차장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음)에 대해서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의무 설치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주차장법」상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와 구조·성능 기준, 충전방해행위 금지 등 준수의무, 충전시설의 개방, 각종 지원 등 전용주차구획 확충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소관, 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율하고 있음¹⁰⁾.

특히, 전용주차구획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전용주차구역¹¹⁾ 및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 참고1. 참조)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 참고2. 참조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현행법 비교 >

구 분	「주차장법」	「친환경자동차법」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	- <u>노외주차장</u>에 대해서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 일정비율 설치 의무화 -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임의 지정 - 충전시설의 종류·성능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u>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u>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일정비율 설치 의무화 - <u>충전시설 종류 구분</u> - <u>충전시설 구조·성능</u> 기준 규정
이용	별도 규정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 차량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 충전방해행위 금지 - 공공부문 충전시설 개방 및 개방정보 공개
관리	별도 규정 없음	- 충전구역 표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충전구역 등 주차금지의무 위반 차량 단속 권한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이 충전시설 개방 정보 통합관리 및 공개
지원	별도 규정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촉진을 위한 금융 및 기술 지원
시정·제재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규정
근거조항	법 제6조·제10조·제24조,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1조의2·제11조의4·제11조의5·제16조, 시행령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와 같이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규정을 「주차장법」에 두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정책과의 연계성·체계성·통일성이 약화되며, 관련 정책을 서로 다른 부처가 수행함에 따라 중복행정, 서로 일치하지 않는 행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내용과 같이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주차장법」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친환경자동차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각 법률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규정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 ② (생략) <신설>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주차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6항에서 같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이하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④ 수급실태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및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의----- -----

현행	개정안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u>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u>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환경친화적 자동차</u>(이하 “<u>환경친화적 자동차</u>”라 한다) 3. 4. (생략) ② ~ ④ (생략)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u>전용주차구획</u>----- -----. 1. (현행과 같음) 2. <u>환경친화적 자동차</u>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를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개선·확충 등 후속 정책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 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담고 있는 「주차장법」¹²⁾

12) 「주차장법」

보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 보급 촉진을 위한 목적의 「친환경 자동차법」¹³⁾과 제도적 연계성이 높으므로 「친환경자동차법」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정책의 환류체계에 보다 적합함.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 충전시설의 종류와 구조 · 성능 기준, 주차방해행위 금지의무와 주차방해행위의 유형, 충전시설 개방 대상, 금융 · 기술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제도 및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주차장법」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둘 경우에는 「주차장법」의 목적 범위 내에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조사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주차장법」에는 이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¹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 ·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 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조사범위를 조정하여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나 화재와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면 「주차장법」의 목적 내에서 일부 개정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의 설치대상·기준,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용주차구획의 보급·이용 현황을 법정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조사결과가 설치의무 이행, 보급정책 수립 등 후속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법」 체계 내 검토되도록 함이 타당함.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법 제6조제1항·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 다.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 마. 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근거만 「주차장법」에 신설할 경우 조사결과
의 제출·통합 및 관계기관 간 공유, 후속조치 연계 등이 어려워져 조사
와 정책집행이 따로 분리될 우려가 있음.

2) 산업통상부 의견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4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
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게 시정명령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1조의5에 따라 3천만원 이
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 준
수 여부를 이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있음.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안 제19조의3제6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법률 제2141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

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과 관련한 주차장 이용자 간의 갈등과 민원 등은 주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충전방해행위와 관련한 문제임.

이에 안 제19조의3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등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를 정착시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비율은 「주차장법」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질서와 관련한 전용주차구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 차량의 주차 금지의무, 충전방해행위 금지의무, 충전방해행위의 유형, 제재조치 등에 관해서도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9조의3제6항에서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의 원활한 설치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의 규율 영역까지 포함될 수 있어, 양 법률에 따른 관리기준이 중복되거나 관계 부처 간의 정책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등 행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주차장법」에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를 둘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법」에서 규율하는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내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임.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안내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은 향후 새로운 사고 유형이나 기술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신설할 실익은 제한적임.

2) 산업통상부 의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설치 대상,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시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주차장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역(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공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공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 ④ (생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2. (생략)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공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지정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 5.(생략)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	법 제24조제1호	250만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15. · 16. (생략)

②~ ④ (생략)

참고2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관련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

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

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